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①항중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①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①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우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와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